동물병원과 방사선 위해

권태억(한성동물병원장)

1990년에 동물병원을 개원하였으니 벌써 17년이나 되었다. 별로 한 것도 없이 허송세월만 보낸 느낌이다.

짧지 않은 세월동안 동물병원을 운영하였지만 동물병원에서의 방사선의 안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려를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정부에서 원자력발전소를 짓기 위하여 후보지를 발표할 때 해당주민들이 집단으로 반대를 하던 모습도 남의 일로만 여겨졌으며, 체르노빌 원전사건도 그렇고 일본의 원폭 피해도 말로만 들었지 실제 경험은 없었으므로 심각성에 대해서는 항상 논외였던 것 같다.

개원 당시에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중고의료기 매매업자를 통하여 구입한 x-ray는 지금 생각하면 아찔하기도 했지만, 가관이었던 것 같다.

찍을 때마다 노출조건이나 촬영시간이 달랐을 뿐만 아니라 교과서에 소개되는 조건표대로 찍으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거나 아니면 새카맣게 타버려서 몇 번을 다시 찍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다.

적당히 기계를 조작하여 영상으로 나타나 주기만 하면 사용했던 당시의 기계로 인하여 내 몸은 얼마나 혹사 당하였을까?

에이프런 하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구획도 되어 있지 않았으며, 진료대 옆에 그냥 무방비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으니...

"원자력발전소 주위와 동물병원 주위에서 방사선량을 측정한다면 과연 어느 곳이 더 높을까?"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동물병원에서 x-ray를 찍어봤자 얼마나 찍는다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무시를 하곤 했다.

하지만 최근에 방사선에 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원자력발전소 주위의 방사선량이 0.01

밀리시버트(mSv) 이하로 공기중의 자연방사선량보다도 오히려 낮다는 믿기 어려운 결과를 접하게 되었다.

발표된 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얼마나 높은지는 논외로 하더라도 동물병원내의 x-ray에 대해서는 새삼스레 다시 한 번 쳐다보게 되었다.

약 2개월 전쯤에 대한수의사회 실무자와 농림부 담당 직원들과 함께 과학기술부 원자력국 방사선안전과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도 연구원이 나와있었다.

방사선안전과 담당 사무관이 TV를 시청하던 중에 동물병원에서 x-ray를 찍는 모습을 보고 경악을 하고 농림부에 업무협조를 요청한 것이었다.

원자력법에 의하면 의료진단용으로 사용하는 엑스선 발생장치는 별도의 규정(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의료법의 적용을 받지만,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진단용 발생장치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원자력법에 따라서 사용금지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통보성 설명이었다.

현직에 종사하는 임상수의사의 자격으로 참여하여 이런 통보나 받게 되니 눈앞이 깜깜하였다.

당장 x-ray를 찍지 못하게 된다면.... 진단은 어떻게 내리고, 계속 사용하던 장비를 못쓰게 될 경우의 불편함, 개업 초창기와 같이 또 가진단이나 내리면서 동물병원을 운영해야 한다는 말인가?

전국의 3000여개 동물병원 중에서 소동물 개업의의 대부분은 x-ray를 갖고 있고, 동물질병의 진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장비이며, 실제 촬영횟수는 많지 않다는 설명을 하였지만 담당사무관은 뜻을 굽힐 생각이 전혀 없어보였다.

직무에 충실하려는 공무원 앞에서 명분없는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보였다.

원자력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면 방사선동위원소 취급자가 상근해야 한다는 것과 안전관리 규정이 의료법에서 규정한 것 보다 더 까다롭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여러 규제가 많은 상황에서 도저히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 같았다.

농림부라는 조직이 임상수의사들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었기에, 항상 임상수의사라는 관점에서 바라본 농림부는 그렇게 우호적인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다.

하지만 지금은 농림부를 성토할 그런 단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수의사법에 관련규정을 신설하여 최소한의 규제만으로 수의사법을 개정해 달라는 간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것이다.

과학기술부의 단호한 입장을 뒤로하고, 관련규정들을 구석구석 찾아내기 위해서 자료들을 모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떻게 하면 어려운 동물병원들을 대변하고, 귀찮고 비용지출이 생기는 것을 피해가고, 규정이 아닌 규제를 최소화하고, 그러면서도 동물진단에 최선을 다하는 길은 무엇일까....

옆에서 듣고만 있던 방사선안전과장님께서 마

지막으로 한 마디 툭 던진다.

"건강돌침대에서 방사능이 검출되었다고 하여 과학기술부로 민원이 제기되고, 9시 뉴스에 이슈가 되는 현실을 이해해 달라"라고.... 동물병원 종사자들과 동물병원에 내원하는 동물보호자들도 방사선의 위해로부터 안전하지 않을 수 밖에 없다는 충고같은 조언을 애써 외면하기에는 '동물병원 경영이 어렵다'는 우리의 핑계가 너무나 왜소해 보였다.

지역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자연으로부터 받는 방사선은 평균 약 2mSv 정도라고 한다.

암석이나 흙속에 섞여 있는 방사성 물질로부터 나오는 방사선, 공기 중에 있는 먼지로부터 나오는 방사선, 물속이나 채소, 과일, 생선이나 육류 등 우리들이 숨쉬고 마시고 먹고 사는 모든 음식물 속에도 빠짐없이 방사성물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그런데 갈수록 인공방사선이 더욱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병원에서 진단을 받거나, 방사선 치료를 하는 횟수가 예전에 비해서 점점 많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여기에 동물병원에서 나오는 방사선도 이들과 별도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어쩔수없이 동물병원에서 나오는 극소량의 방사선도 동물병원을 내원하는 보호자와 동물병원 종사자의 연간허용선량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규제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질 것 같다.

더군다나 동물병원에는 제조회사이름도 모르고, 어떤 부품이 들어간 것인지도 모르고, 앞으로 새는지 옆으로 새는지도 모르는 수 십년된 장비들을 사용하는 곳도 있다.

시한폭탄을 안고가는 형국이라고 표현하더라도 달리 변명의 여지가 없다.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x-ray는 동물용으로 별도 제작되거나, 아니면 동물병원의 입장을 고려하여 특별히 제작한 장비들이 아니다.

일부 동물용으로 제작한 장비도 있지만 수의과학검역원에 신고만 하고 판매하는 장비여서, 허가를 받은 인의용 장비와는 안정성에서 대비가 되는 것이 사실이다.

사람 병원에서 사용연한이 지났거나, 고장이 났거나, 기타 여러 이유로 못쓰게 된 장비들을 고쳐서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결국 이런 장비들은 의료법에서 규정한 규제대상 장비들이다.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x-ray가 의료법에서 규제되는 것이라면 동물병원에서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예외조항을 별도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은 어려워진 실정이다. 한마디로 명분이 없는 것이다.

보다 불리한 규제들이 더 많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의 실상을 바로 파악하고 대비를 해야만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동물병원 종사자들의 불안을 최소화하고, 보호자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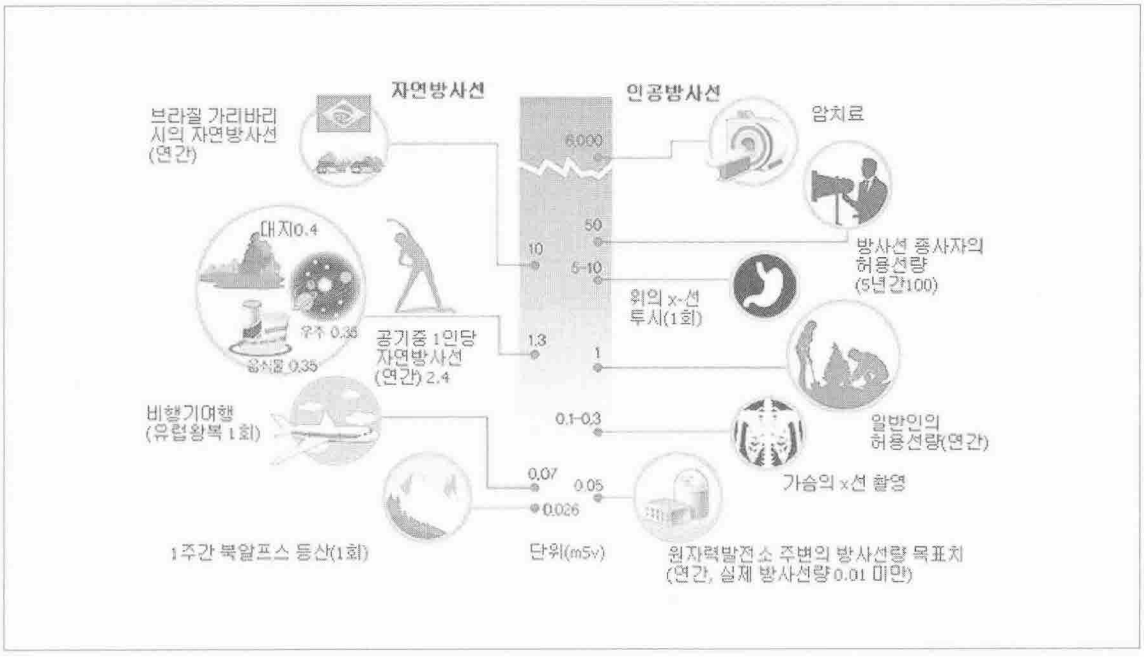

〈참조〉 한국원자력문화재단 발표 방사선량

폐수, 폐기물, 향정신성의약품, 복식부기, 사업자용 통장개설, 진료부 등 지금도 신경써야만하는 업무들이 많고 보호자들과의 분쟁은 늘어만 가기 때문에 동물병원의 경영이 점점 힘들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가만히 앉아서 더 많은 것을 빼앗기는 것 보다는 미리 준비하여 우리에게 좀 더 유리한 부분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서둘러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즉, 실리를 챙겨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언제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 규격은 얼마며, 사용장비의 형식은 어떻고, 실제 1주당 촬영 횟수가 얼마고, 별도의 구획을 갖고 있는 동물병원은 얼마나 되고....한국의 동물병원들의 현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조사된 자료를 근거로 현실성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규제를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내일은 또 다른 내일의 태양이 뜰 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오늘 하루도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대한민국의 임상수의사라는 자부심으로 살고있다.

임상수의사 모두의 희망을 꿈꾸며.... 데수